

의안 번호	2554	<b>[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 <b>심 사 보 고 서</b>
----------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2. 26.(목) 김도운 의원 외 9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2. 26.(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3. 9.(월)

## 2. 제안설명 요지(김도운 의원)

###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률고문의 역할수행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3조 및 제4조)
-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다. 참고사항

- 근거법규: 해당없음
-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025(2025. 12. 4.)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sup>1)</sup>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미정)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연임 규정의 부재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고문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여부와 그에 대한 제한을 1회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법률고문의 역할수행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안 제1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입법의 명확성 및 기술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음.
-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가결

# 참 고 자 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2025. 12.)」

### □ 현황

- 각 자치구 의회는 입법이나 법률 사안 및 의회 운영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운영

### □ 문제점

- 대다수 자치구 의회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 여부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
  - 연임 여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연임 또는 재위촉할 수 있으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가 우려
  - 장기 연임 시 특정인에게 의회 관련 일감 몰아주기,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부패 발생 우려가 있고,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참고>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중 위원 임기와 신분규정 일부

- ◆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 “연임할 수 없다.” 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 ◆ “위원회의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연직인 위원이나 그 직위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중략)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 개선방안

- 부산 수영구의의회 등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여부 및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 대구 남구의의회, 인천 남동구의의회 등 연임 규정이 있는 자치구 의회는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